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7일, 남인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 7.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2. 20.)

상정, 축조심사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3.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3.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남인순의원)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

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시점과 혜택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 등에 대해서도 출산크레딧을 인정해주고 있어, 단순히 출산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보다는 아동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현행법상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기간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출산크레딧 도입 당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라는 국가정책적 차원이 고려된 점,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산크레딧 비용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출산 장려의 정책목적이 달성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국가의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출산크레딧과 관련하여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다만, 미래 세대에 재정부담이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해외사례와 시나리오별 재정 부담의 총량 비교결과 등을 참고하여 출산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 출산크레딧 수혜자의 성별 간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입기간 추가 산입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 국민연금 크레딧제도의 보장성 강화 논의를 위하여서는 보건복지부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로 연금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개정안의 내용을 채택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